

진출가이드북

케냐 국방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

2019. 12.

제 목 차 례

제1장 케냐 국방조달시장 개관	3
1. 국가개요	3
2. 국방조달시장 현황	4
1) 방위산업 시장	4
2) 국방조달 시장	9
3. 국방조달 운영체계	11
1) 근거 법령	11
2) 국방조달 운영조직	11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13
1) 입찰 기본원칙	13
2) 일반 조달제도	13
3) 절충교역 제도	17
4) 주요 조달지원제도	17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12
1. 입찰준비단계	22
1) 현지화 작업	22
2) 입찰준비	25
3) 벤더 등록	26
2. 입찰참여단계	29
1) PQ 심사 및 입찰초청	29
2)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	34
3) 입찰평가 및 낙찰자 통보	36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38
4. 사후관리	42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7

표 차 례

<표 1-1> 케냐 병력 현황 (2019)	4
<표 1-2> 케냐의 육군 군사력 개요 (2019)	4
<표 1-3> 케냐의 공군 군사력 개요 (2019)	5
<표 1-4> 케냐의 해군 군사력 개요 (2019)	5
<표 1-5> 최근 10년간 케냐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7
<표 1-6> 최근 10년간 케냐의 품목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8
<표 1-7> 케냐의 품목별 무기 수입 규모 (2009-2018)	8
<표 1-8> 케냐 국방예산 및 국방조달 규모	9
<표 1-9> 케냐의 공공조달에 대한 공공기관의 등급 분류	13
<표 1-10> 케냐 공공기관 등급별 입찰방식 허용치 범위	13
<표 2-1> 입찰유형별 입찰자 선정과정	21
<표 2-2> 케냐의 진출유형별 비교	23
<표 2-3> 케냐의 현지법인 등록절차	24

그 림 차 례

<그림 1-1> 케냐 무기 수입 추세 (1950-2018)	6
<그림 1-2> 케냐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비중	7
<그림 1-3> 케냐의 주요 품목별 무기 수입 비중	8
<그림 1-4> 케냐의 국방예산 지출 추이 및 전망 (2019년 기준)	9
<그림 1-5> 케냐 국방부 전자조달 입찰공고 화면	18

제 1 장

케냐 국방조달시장 개관

1. 국가개요
2. 국방조달시장 현황
3. 국방조달 운영체계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제1장 케냐 국방조달시장 개관

1. 국가개요¹⁾

<표 1-1> 케냐 국가개황

국명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
위치	아프리카 동부
면적	569,259km ² (한반도의 2.6배)
기후	아열대성 사막 건조기후
수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5,082 만
주요 도시	Nairobi(450만 명), Mombasa(110.4만 명), Nakuru(160만 명), Kisumu(97만 명) 등
민족	Kikuyu 22%, Luhya 14%, Luo 13%, Kalenjin 12%, Kamba 11%, Kisii 6%, Meru 6%, Masai 등 기타 아프리카 부족 15%(총 43개 부족), 비아프리카인(아시아계, 유럽계, 아랍계) 1%
언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40개 이상의 현지 부족언어
종교	기독교 83%(개신교 47.7%, 가톨릭 23.4%, 기타 11.9%), 이슬람교 11.2%, 기타 5.8% (2009년 인구센서스 기준)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상원 67석, 하원 349석)
국가원수	UHURU KENYATTA(제5대 대통령) 취임일: 2017년 11월 29일
GDP(명목)	749억 달러(2018년)
실질경제성장률	4.9%(2017년)
1인당 GDP	1,608달러(2018년)
실업률	9.2%(2018년)
물가상승률	8.0%(2018년)
화폐단위	케냐 실링
환율	1달러 = 103.41케냐 실링 (2018년)
외 채	222억 달러(2018년 기준)
외환보유고	71억 달러(2018년 기준)
교역규모	수출: 60억 달러/수입: 150억 1천만 달러 (2017년 추정치)

자료 : KOTRA 케냐 무역관 (검색 : 2019. 12. 26)

1) KOTRA (2016), 아프리카 프로젝트 시장 동향 및 수주전략, pp. 89-116, KOTRA 나이로비무역관 (2016), 2017년 케냐 진출전략을 정리한 것임

2. 국방조달시장 현황

1) 방위산업 시장

(1) 군사력

<표 1-2> 케냐 병력 현황 (2017)

구분	Total strength	Army	Air force	Navy
Active personnel	24,600	20,000	3,000	1,600
Reserves	5,000	-	-	-

자료 : IHS Jane's data - Armed forces (2019.12.)

<표 1-3> 케냐의 육군 군사력 개요 (2017)

Strength : 20,000	
Primary combat units 2 Infantry brigades 1 Armoured brigade 1 Artillery brigade 1 Air defence battalion Armoured vehicles Vickers Mk3 main battle tanks WZ551 armoured personnel carriers Puma M26-15 armoured personnel carriers M3 armoured personnel carriers Artillery 155mm NORAB-52K1 howitzers 105mm Model 56 Pack howitzers L118 105mm Light guns	Ground-based air defence systems Mistral surface-to-air missiles 20mm TCM-20 light anti-aircraft guns (twin) (towed version) 40mm Bofors L/70 anti-aircraft guns Rotary-wing attack aircraft MD500 'LittleBird' Z-9 'Haitun'
Base : 10 (Gilgil, Thika, Kabete, Kahawa, Ruiru, Eldoret, Nakuru, Langata, Moyale, EL Wak)	
Training : 케냐 내 국립 국방대학이나 아카데미 불분명, 여러 학교에서 교육 • School of Infantry • School of Armour • School of Artillery • School of Combat Engineers • School of Ordnance (SOO) • School of Transport (SOT) • School of Signals • School of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SEME) • Defence Forces Pay and Clerical Training School • Defence Forces School of Higher Education (AFSHE) • Defence Forces Medical Training School (AFMTS) • Joint Helicopter Training School (JHTS) • Defence Forces Constabulary Fire Services Training School (DFSTS) • International Mine Action Training Centre (IMATC)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훈련지원을 받음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IMET), the Africa Contingency Operations Training and Assistance (ACOTA) programmes 등 운영해옴)	

자료 : IHS Jane's data - Army (2019. 12.)

<표 1-4> 케냐의 공군 군사력 개요 (2017)

Strength : 3,000			
Fixed-wing multirole combat aircraft F-5E Tiger II	Rotary-wing multirole combat aircraft Z-9WE Haitun AH-1F HueyCobra		
Fixed-wing transport aircraft Y-12 (II) DHC-8 Series 103 DHC-5D Fokker 70	Rotary-wing logistics aircraft Mi-171 Hip IAR-330L Puma SA 330H Puma UH-1H Huey II		
Base : 4 (Moi, Moi International Airport, Laikipia, Wajir Airport)			
Order of battle (전투서열)			
Unit	Base	Type	Role
15 Fighter Squadron	Laikipia	F-5E1	Air defence/attack
15 Fighter Squadron	Laikipia	F-5F1	Continuation training
Light Attack Squadron	Laikipia	Hawk	Counter-insurgency/attack/advanced training
14 Transport Squadron	Moi	Buffalo	Transport
14 Transport Squadron	Moi	Dash 8	Transport
Liaison Squadron	Moi	Y-12(II)	Communications
Helicopter Squadron	Moi	Puma	Utility transport
Helicopter Squadron	Moi	Mi-171	Utility transport
Helicopter Squadron	Moi	Z-9WE Haitun	Attack/utility
Helicopter Squadron	Laikipia	Huey II	Utility/assault
Flying Training School	Laikipia	Grob G120	Primary training
Flying Training School	Laikipia	Tucano	Basic training

자료 : IHS Jane's data - Air Force (2019. 12.)

<표 1-5> 케냐의 해군 군사력 개요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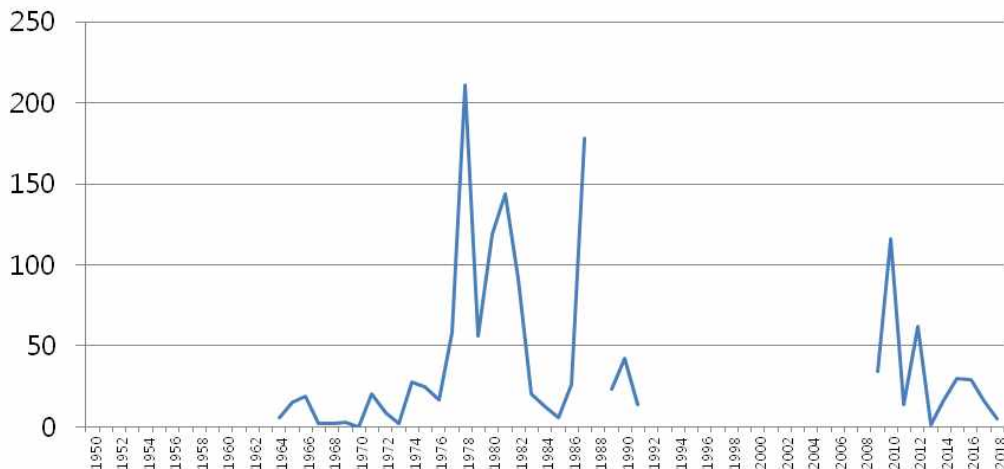
Strength Regular:1,600 / Marines:120	
Fast attack craft - missile Nyayo-class	Patrol craft - fast Defender patrol craft-fast Archangel patrol craft-fast
Base : 5 (Kisumu, Lamu, Manda, Malindi, Mombasa)	
Training : the Kenya Navy Training School (NTS)에서 주로 담당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훈련지원을 받음 (Africa Partnership Station (APS) programme 등)	

자료 : IHS Jane's data - Navy (2019. 12.)

(2) 군수품 수입현황

- 1950년부터 2016년까지의 케냐 무기수입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주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미사일, 장갑차 및 탱크 등을 수입하였고, 이후 무기수입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가 20여년 만에 2010년에 대규모 항공기를 수입하면서 거래량의 증가가 있었지만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음
-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격퇴를 위해 2011년 병력을 파견한 이래 이들 반군의 케냐 내 테러공격에 시달림에 따라 케냐 정부는 경찰력 강화 및 국방부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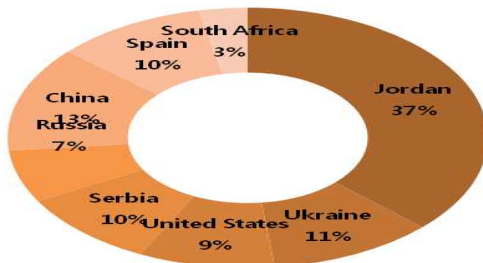
50년간 무기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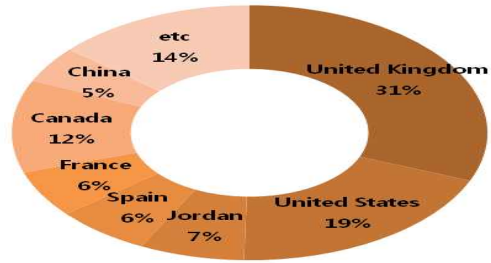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6.) 재가공

- 1950년-2018년까지 케냐의 주요 무기교역국을 살펴보면, 영국(31%), 미국(19%), 캐나다(12%) 순으로 주로 영미권과 거래를 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에는 요르단(37%), 중국(13%), 세르비아(10%) 등의 순으로 무기교역국이 다양해졌음
- 케냐는 1970-80년대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주로 거래해 오다가 최근 10년간 주요 교역국이 다양화되어 영미권 이외에 러시아, 중국, 스페인, 세르비아 등 교역상대국을 늘리고 있음
- 주로 중국과 세르비아는 기동분야를, 중국과 러시아는 항공분야, 스페인은 선박 분야 등에 진출하고 있음

<2009년-2018년간 누적 비중>



<1950-2018년간 누적 비중>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6) 재가공

<그림 1-2> 케냐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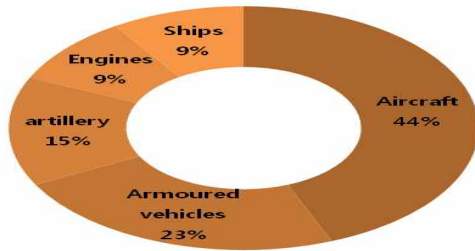
<표 1-6> 최근 10년간 케냐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국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적	비중(%)
중국		13				7	10	11			40	12.38
프랑스			8							2	10	3.10
독일				4	1						5	1.54
요르단		83		21					9		113	34.98
러시아		20									20	6.19
세르비아						10	19				29	8.91
남아프리카공화국			5	5							10	3.10
스페인				31							31	9.60
우크라이나	34										34	10.53
미국			1	1			1	19	6		28	8.67
합계	34	116	14	62	1	17	30	30	15	2	3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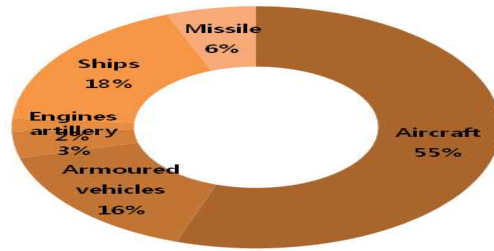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6.) 재가공

- 1950년-2018년까지 케냐의 주요 품목별 무기현황을 살펴보면, 항공기가 55%로 가장 많고, 선박(함) 18%, 장갑차(16%) 등의 순으로, 최근 10년간 수입거래도 항공기(59.57%)와 선박(12.03%)의 비중이 거의 비슷함
- 특이한 것은 케냐에서는 지금까지 1건의 방공시스템도 통계상 거래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방공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2007년-2016년간 누적 비중>



<1950-2016년간 누적 비중>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6) 재가공

<그림 1-5> 케냐의 주요 품목별 무기 수입 비중

<표 1-7> 최근 10년간 케냐의 품목별 주요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품목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적	비중(%)
항공기		112		20	1	7	11	19	15	3	170	59.57
장갑차	34		5	5		1	1	10			66	18.21
포						9	18				27	8.33
엔진			1	5							6	1.85
선박(함)			8	31							39	12.03
합계	34	112	14	61	1	17	30	29	15	3	308	100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7. 12. 26.) 재가공

2) 국방조달 시장

- 케냐의 국방조달은 탄약이나 군인용품 등 몇 가지 소규모 품목을 제외하고 장비 및 설비 등 대규모 품목은 거의 외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방산기업들은 케냐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제조 및 마케팅, 판매 활동을 하고 있음
 - 몇몇 기존 업체가 가진 역량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할 가능성은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케냐가 스스로 제조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표 1-8> 케냐 국방예산 현황 (2015-2022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국방예산 USD billion	1.059	1.051	1.051	1.146	1.079	1.018	1.044	1.075
국방예산 Local billion	112.414	111.539	111.514	121.600	114.529	108.037	110.768	114.097
% GDP	1.379%	1.303%	1.231%	1.27%	1.130%	1.011%	0.982%	0.960%

자료 : Jane's (2019), Kenya : Defence Budget Overview (2019.3.29)

- 외국방산기업들은 케냐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제조 및 마케팅, 판매 활동을 하고 있음

3. 국방조달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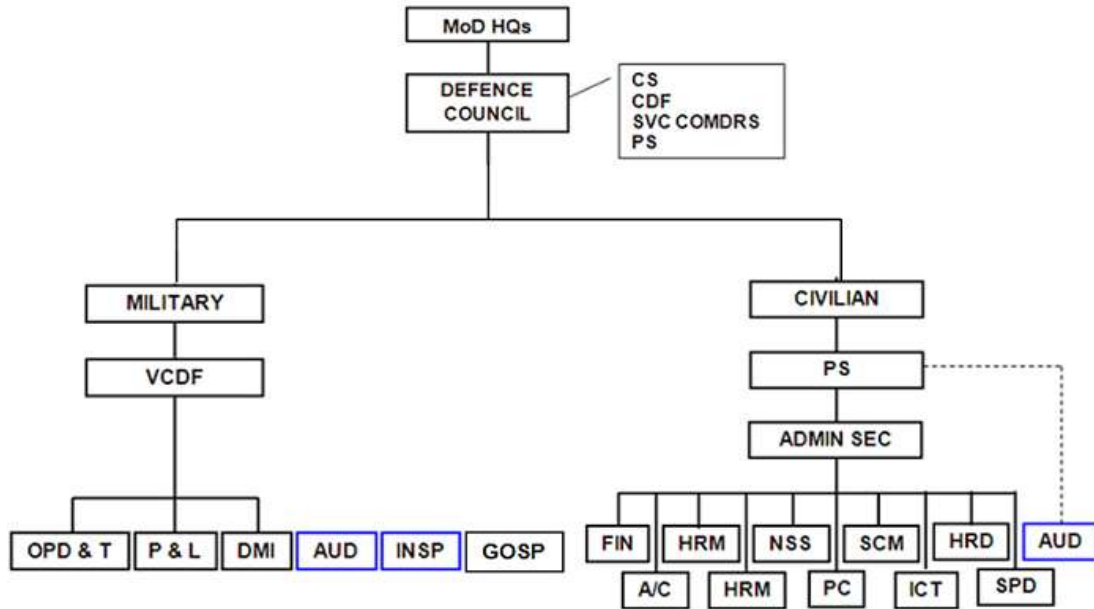
1) 근거 법령

- 케냐의 국방 조달은 『2005년 공공조달 및 매각에 관한 법률(Public Procurement and Disposal Act)』의 적용을 받음. 국방 조달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회의 감독을 받음. 대규모 조달 관련 예산은 케냐 재무부가 승인하나 조달 절차의 적법성을 관리 감독하는 책무는 정부 산하 공공조달감시청(Public Procurement Oversight Authority)에 배정
 - 동 법은 2005년 동명의 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2005년 폐지된 법에 따른 현행의 하위법령들은 그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동 법 section 182)
 - 동 법의 section 90(1)에 따라 국가안보조직(national security organs)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조직 및 공공기관에 적용됨
 - 이때, 국가안보조직은 케냐의 군대, 경찰, 국가안보정보서비스, 교도소, 행정 경찰, 와일드라이프(Wildlife) 서비스 등을 의미함²⁾
- 2016년 8월에 발효된 케냐군 개정법안(Defence Force Amendment Act 2016)은 케냐의 예산·조달 규정의 개혁을 골자로 하며 이 개정안에 따라 케냐군(KDF)에 대한 예산은 국회 승인을 얻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승인함. 이로써 국방 내각장관(Defence Cabinet Secretary)의 감독을 축소하고 감사원장의 감사도 배제할 수 있게 됨. 또한 입찰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향후 수의 계약이 적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공공조달 및 매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케냐군(경찰, 교정, 소방 등 치안 부문 포함)은 공개 조달 품목과 제한 조달품목 등 이중 품목을 관리해야 하나 거의 모든 국방물자에는 제한 조달 절차가 적용됨. 케냐군의 비 군사용 품목(가령, 사무용 비품 등)에 대해서는 공개 조달방식이 적용됨. 공개 조달 및 제한 조달 품목 목록은 국가안보기관과 공공조달감독청(조달 절차 적용 시 관할권을 갖는 공식 정부기관) 간 매년 합의를 거쳐 확정함.

2) 국방조달 운영조직

2) 해당 정의는 2005년 폐지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2015년 법에 승계되었음

- 케냐에서 공공조달을 집행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 part 2에 따르면, 재무부 (The national treasury), 공공조달 규제청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공공조달규제위원회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Board), 공공조달 행정검토 위원회 (Public Procurement Administrative Review Board) 등이 존재함
 - 재무부는 주로 국가 정부를 위한 상품품의 조달, 집행,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역할을 함
 - 공공조달규제청은 주로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시스템을 모니터링, 평가,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2005년 폐지법에 따라 세워진 PPOA(Public Procurement Oversight Authority)가 그대로 이 역할을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음
 - 공공조달규제위원회는 규제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공공조달 행정검토 위원회는 중앙적 독립 조달상고위원회로 입찰에 따른 분쟁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각 군에서 국방 전력 검토서에 명시된 소요 전력을 식별한 후 국방부는 소요 품목·용역에 대해 운용 사양 및 기술 사양서를 작성함. 그리고 잠정 공급업체 및 예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함.(케냐의 조달기관은 조달 시 사전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시장 조사 보고서는 대규모 공공지출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케냐 물자·기반시설자문위원회(Equipment & Infrastructure Advisory Committee, EIAC)로 제출함. EIAC가 구매를 승인할 경우, 케냐 재무부에 공개조달 의무 면제 신청서가 전달됨. 입찰서류를 기안해 잠정 공급업체에 발송함. 필요 시 현장 시험 또는 운용 시험을 실시함. 최종적으로 비용(전 수명주기 비용 포함) 및 적합성을 기준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 후 계약 협상을 실시
 - 국방부 내 공급사슬관리 부서(Supply Chain Management Division)에서 조달계획, 입찰 및 조달위원회 구성,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에 따른 조달집행 등을 담당함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1) 입찰 기본원칙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 section 3에 따라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방조달에도 적용됨

- (a) 헌법 제10조에서 제공된 국가 가치와 원칙
- (b) 헌법 제27조에서 제공된 평등과 자유
- (c) 헌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제공된 단언적(affirmative) 활동 프로그램
- (d) 리더십과 청렴법(the Leadership and Integrity, 2012)에 따른 청렴 원칙
- (e) 헌법 제201조에서의 공공재정 원칙
- (f) 헌법 제232조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원칙
- (g) 조달관 (procurement profession) 관리 원칙, 국제규범
- (h) 구매효율성(value for money)의 극대화
- (i) 지역산업 관련 진흥,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 (j) 민간계약자의 진흥 등

2) 일반 조달제도

(1) 주요 입찰방식

- 케냐에서는 통상 각 입찰방식별로 규정된 최대 허용치(threshold) 범위에 따라 입찰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게 됨
 - 공공기관을 Class A, B, C로 구분하고, 입찰방식별 최대허용치 범위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음

<표 1-9> 케냐의 공공조달에 대한 공공기관의 등급 분류

공공기관 등급	기관유형
Class A	국영기업(State Corporations), 정부부처(Ministries)
Class B	시의회(City Council; Nairobi, Mombasa, Kisumu), Cooperative Societies, 대학(Universities, Colleges), 사법부(Judiciary), 위원회(Commissions), 입법부(Parliament), 지역(Districts), 지방병원(Provincial Hospitals), 준자치 정부기관(Semi-Autonomous Government Agencies)
Class C	기타 지방 행정부(Other Local Authorities; Municipal, County, Town Councils), 학교(Schools), 지역병원(Districts Hospitals, Sub-District Hospitals), 보건소/약국(Health centres/Dispensaries), 선거구 개발펀드 위원회(Constituency Development Fund Committees), 자원봉사기관(Voluntary Organizations/ Institutions)

자료 : PPOA (2014), User Guide : PPAD Act and PPAD Regulations

<표 1-10> 케냐 공공기관 등급별 입찰방식 허용치 범위

등급	입찰 방식	최대 및 최소 허용치			조달과정에서 책임분담			
		물품	공사	서비스	조달초안 책임자	계약체결 책임기관	계약서명 책임자	납품 확인
A	국제 경쟁 입찰	한계 없음	한계 없음	한계 없음	회계직원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국내 경쟁 입찰	600만 KES ~ 할당된 예산	600만 KES ~ 할당된 예산	300만 KES ~ 할당된 예산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제한 입찰	200만 KES ~ 할당된 예산	400만 KES ~ 할당된 예산	200만 KES ~ 할당된 예산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제안 요청	~ 조건총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총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총족 최대 세출까지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직접 조달	~ 조건총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총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총족 최대 세출까지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조달위원회 (50만 KES 이하)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50만 KES 이하)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견적 요청	품목당 3만 ~ 200만 KES	품목당 5만 ~ 400만 KES	품목당 3만 ~ 200만 KES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조달위원회 (50만 KES 이하)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50만 KES 이하)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최저 가격	~ 품목당 3만 KES	~ 품목당 5만 KES	~ 품목당 3만 KES	사용부처의 장	사용부처	조달부서의 장	보관직원 (stores officer)
B	국제 경쟁 입찰	한계 없음	한계 없음	한계 없음	회계직원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국내 경쟁 입찰	500만 KES ~ 할당된 예산	500만 KES ~ 할당된 예산	300만 KES ~ 할당된 예산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제한 입찰	150만 KES ~ 할당된 예산	300만 KES ~ 할당된 예산	150만 KES ~ 할당된 예산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등급	입찰 방식	최대 및 최소 허용치			조달과정에서 책임분담			
		물품	공사	서비스	조달초안 책임자	계약체결 책임기관	계약서명 책임자	납품 확인
	제안 요청	~ 조건충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충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충족 최대 세출까지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직접 조달	~ 조건충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충족 최대 세출까지	~ 조건충족 최대 세출까지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조달위원회 (50만 KES 이하)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50만 KES 이하)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견적 요청	~ 150만 KES	~ 300만 KES	~ 150만 KES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조달위원회 (50만 KES 이하)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50만 KES 이하)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최저 가격	~ 품목당 1만 KES	~ 품목당 1만 KES	~ 품목당 1만 KES	사용부처의 장	사용부처	조달부서의 장	보관직원 (stores officer)
C	국제 경쟁 입찰	한계 없음	한계 없음	한계 없음	회계직원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국내 경쟁 입찰	400만 KES ~ 할당된 예산	400만 KES ~ 할당된 예산	200만 KES ~ 할당된 예산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제한 입찰	50만 KES ~ 할당된 예산	50만 KES ~ 할당된 예산	50만 KES ~ 할당된 예산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제안 요청	한계없음	한계없음	한계없음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회계직원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직접 조달	한계없음	한계없음	한계없음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20만 KES 이하)	입찰위원회, 조달위원회 (20만 KES 이하)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20만 KES 이하)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견적 요청	~ 50만 KES	~ 50만 KES	~ 50만 KES	사용부처의 장	입찰위원회, 조달위원회 (10만 KES 이하)	회계직원, 사용부처의 장 (10만 KES 이하)	평가, 협상, 검토 및 접수 위원회
	최저 가격	~ 품목당 5천 KES	~ 품목당 5천 KES	~ 품목당 5천 KES	사용부처의 장	사용부처	조달부서의 장	보관직원 (stores officer)

자료 : PPOA Legal Notice No. 166 First Schedule Threshold Matrix (검색일 “ 2017. 8. 10)

- 입찰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소액 입찰건의 경우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나 금액이 큰 조달사업은 제한 조달 절차가 적용됨. 국방 획득사업은 사실상 제한 입찰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이외 사전검증 절차가 실시될 수도 있음)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시행 전에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대개 외교적 경로, 무역 전시회, 현지 사무소 설립 등을 통한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케냐에서는 통상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입찰의 특성에 따라 입찰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데, Class A에 해당하는 국방부 및 KOFC에서 진행하는 국방조달은 최소 및 최대 허용치에 따라 입찰방식을 결정하되, 일반물자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제한입찰을 활용함
 - 입찰방식을 선택할 해당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련 국가안보조직(국방부 등)과 PPOA에 의해 매년 동의를 얻어야 함 (IHS Jane's, 2019)

구분	주요 내용
일반경쟁입찰 (open tendering)	가장 우선되는 조달방식으로, 기본 원칙임
2단계 입찰 (two-stage tendering)	기술진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복잡성으로 인해 세부 특정사항을 실행할 수 없을 때 활용됨 (물품, 공사, 비자문서비스에 활용) - 1단계 : 입찰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기술제안서를 입찰서 초안으로 제출 - 2단계 : 규격, 입찰가격이 있는 최종제안서를 제출
설계경쟁 (design competition)	가장 좋은 건축적(architectural), 물리적 계획 및 다른 설계도, 엔지니어링, 그래픽이나 다른 설계도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활용 - 설계제안 초청 후,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위원회에는 최소 1명의 기술적 평가사를 둠 - Top 3 설계도는 상금(사례금)이 수여되며, 입찰자는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조달 기관에 양도해야 함
제한 입찰 (restricted tendering)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때 활용됨 - 물품, 공사, 용역이 복잡하거나 특정적 속성이 있어, PQ 입찰자에게 제한될 때 - 다량의 입찰서를 평가하고 검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 비합리적일 때 - 물품, 공사, 용역의 전체 시장에서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 - 제한입찰을 통해 조달할 의도로 조달기관 웹사이트에 입찰공고가 게재될 때
직접 조달 (direct procurement, 수의계약)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때 활용됨 - 특정 공급자나 계약자로부터만 활용할 수 있거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어떤 합리적 대안적, 실재적 존재가 없는 경우 - 전쟁, 침입, 무질서, 자연재해 때문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예측될 수 없거나 지체의 결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조달방식이 비실용적일 경우 - 대이변에 의해 긴급 수요로 다른 조달방식을 활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실용적일 경우 - 기존과의 표준화를 이유로 추가적 조달을 하려할 때, 원 조달의 효과성, 한정된 규모, 가격의 합리성, 대체 부적합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호환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 구매가격을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획득하려 할 경우
견적요청 (request for quotations)	예정가격이 견적요청 최대 허용치 이하이면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쉽게 조달 가능한 경우
전자 역경매 (electronic reverse auction)	전자시스템을 통해 역경매를 진행하는 방식
최저가격제 (low value procurement)	최저가격제 최대 허용치 이하이면서, 기본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정기적 혹은 수시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최저가치 품목(low value items)을 조달하려는 경우
부대회계 (force account)	공공자산이나 장비, 노동력을 활용하여 계약이행하는 방식(인소싱 형태)으로, 허용치 범위 내이면서, 총 비용이 지배적 시장이율에 비등한 것이어야 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때 활용됨 - 다량의 공사가 작고 드문드문 있거나, 자격이 있는 건설업체가 합리적 가격으로 입찰하지 못할 정도로 원격지에 있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수행되도록 요구될 경우 - 계약자에 의해 지연된 공사를 완공해야 할 경우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s)	일반경쟁을 통해 기본협정을 체결하는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때 활용함 - 조달가격이 규정한 허용치 내에 있으면서, 요구된 수량이 명확히 결정되지 못할 경우 - 최소 7명의 대안적 벤더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케냐의 공공기관들은 공동 관심사를 가진 조달기관/부서는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보기 위해 협력적 조달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구매(consortium buying)를 진행할 수 있음

(2) 조달대리점의 설립 및 대리인 임명

- 공공조달 및 자사처분법 section 49에 따라 공동 관심사를 가진 공공기관의 조달기관/부서는 각 부문별 조달기관을 대신하여 부문 특정 물품, 용역, 공사의 조달 및 배분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수준에서 조달대리점(procuring agency)을 설립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조달기관/부서는 조달 및 자산처분 대리인(agent)을 임명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조달 및 자산처분을 경쟁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임명이 가능함(동 법 section 51 (1), (2))

- (a) 내부 역량의 부족이 나타날 때
- (b) 조달 및 자산처분 유닛(unit)을 설립하는 동안 무자격(inability)에 대비할 때
- (c) 다른 국가조직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 공공기관은 규제청에 자격면허를 받고 등록된 대리인 목록에서 속하는 대리인만 임명할 수 있고, 동일한 거래에 대해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임명하지 못함(동 법 section 51 (3), (5), (6))
 - 국제조달 대리인의 경우, 로컬 대리인을 우선적으로 임명함

(3)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도

- 케냐에서 입찰보증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2% 미만으로 책정되며, 소기업, 여성/청년/장애인 그룹 기업은 입찰보증 서약서로 대신함
- 케냐에서 계약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 이하를 계약서 서명전에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가격이나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은 입찰이거나 여성/청년/장애인 그룹의 기업이 참여한 입찰, 계약이행보증 면제규정이 있거나 1% 이하로 고정된 품목의 입찰의 경우에는 면제됨
- 이러한 계약이행보증은 은행보증의 형태로 지불되며, 그 은행보증은 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으로 발행됨
 - 입찰자가 외국인일 경우, 케냐 중앙은행에서 인정한 케냐 내 은행에서 발행하거나 로컬은행이나 권한이 있는 재정기관에 의해 발행된 신용장이어야 함

3) 절충교역 제도³⁾

- 케냐는 공식적인 절충교역 정책 및 전담기관을 운용하고 있지 않음
- 국방조달절차를 통해 장기간 회수보다는 저가를 강조하여, 조달수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국방획득을 위한 R&D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

3) IHS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 p.18 내용 인용

이전 등에 대한 법적인 마련이 미흡한 편임

4) 주요 조달지원제도

(1) 자국업체 및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를 위한 참조 및 예정계획 수립 및 집행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 part 12에 따르면, 조달의 참조 및 예정계획은 케냐인 주주이거나 케냐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조달과정에서 우대하도록 명시함
 - 50억 케냐실링 이상이고 100% 케냐 정부에 의해 펀딩된 사업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케냐 시민에게 적용하고 있음(동 법 157(8))
 -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입찰에서도 최소 40%는 케냐 시민의 물품이 되도록 입찰문서에 의무적인 요구사항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 법 157(9))
- 조달계획에서부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룹 기업에 대해 조달 예산의 최소 30%를 할당 유보해야 하며(동 법 part 6. 53(6), part 12. 157(5), (10)), 입찰참여가 참조사항 중 여러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동 법 part 12. 156)
-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도에서도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그룹 기업에 대해 면제 혹은 서약서로 대체됨
 - 입찰보증에 대해서는 입찰보증 서약서로 대체하며, 계약이행보증은 사회적 약자 그룹(소기업 제외)에 대해서 면제됨
- 입찰평가에서도 케냐 시민 계약자이거나, 최소 51% 주식을 가진 케냐 시민이 소유한 기업의 경우, 총 평가점수의 20%를 기술점으로 우대함(동 법 part 7. 86(2))
 - 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로컬 계약자가 참여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됨(동 법 part 7. 89)

(2) 전자조달의 활용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 part 6. 6에 따라 조달 절차는 각 단계별 모든 의사소통에 대해 서면으로 이루어지나, 통지발표,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평가,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요청, 법령의 배포, 디지털 서명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케냐에서는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통보 등을 하고 있으며,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케냐 정부의 공식적인 전자입찰 포털이 있음(<http://supplier.treasury.go.ke/site/tenders.go/index.php/>)
- 국방조달은 주로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일반물자에 대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공고를 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에 대한 공고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그림 1-8> 케냐 국방부 전자조달 입찰공고 화면

MINISTRY OF DEFENCE

Home About Us Services Administration Centres of Excellence Resource Centre Recruitment **Tenders** Contact Us

Ministry of Defence- Kenya » Tenders

Date	Title	Download
25 April 2017	1. PREQUALIFICATION OF FIRMS FOR THE SUPPLY OF VEHICLE SPARE PARTS FOR JEIFANG FAW HEARSE (SUZU LEYLAND AND STEYR	
25 April 2017	2. PREQUALIFICATION OF FIRMS FOR THE SUPPLY OF VEHICLE SPARE PARTS FOR LAND ROVERS	
25 April 2017	3. REGISTRATION OF FIRMS FOR THE REPAIR AND SERVICING OF UNDERGROUND FUEL TANKS FUEL DISPENSING MACHINES	
25 April 2017	4. REGISTRATION OF FIRMS FOR THE REPAIR MAINTENANCE AND OVERHAUL OF ENGINEERS BRIGADE PLANTS EQUIPMENT	

Events Monthly Archive
Events Monthly Archive
Select Month

Related Link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Keeping (UNDP)
- African Union (AU)
-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 (AMISOM)
- Eastern Africa Standby Force (EASF)
-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1. 입찰준비단계
2. 입찰참여단계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4. 사후관리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 국방조달은 최소 및 최대 허용치에 따라 입찰방식을 결정하되, 일반물자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제한입찰을 활용함
-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입찰 준비, 입찰초청,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 입찰서 평가 및 낙찰자 통보, 계약서 체결, 사후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됨
 - 일반경쟁입찰 이외에 제한입찰, 2단계 입찰, 견적요청, 제안요청, 직접조달, 최저가격제, 전자역경매 등은 기본절차로 PQ 심사를 거친 후에 각 입찰방식의 특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표 2-1> 입찰유형별 입찰자 선정과정

유형	과정 개요
일반경쟁입찰	입찰 준비(조달계획) → 입찰초청 →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 → 입찰서 평가(사후평가 포함) 낙찰자 통보 → 계약 체결 → 사후관리
제한입찰, 2단계 입찰, 제안요청 등	입찰 준비(조달계획) → PQ 심사 및 입찰초청 →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 → 입찰서 평가(사후평가 포함) 및 낙찰자 통보 → 계약 체결 → 사후관리
견적요청	견적요청 준비 → PQ 심사 및 견적요청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평가 및 낙찰자 통보 → 계약체결 및 구매주문 → 사후관리
직접조달(수의계약)	입찰 준비(조달계획) → PQ 심사 및 입찰문서 발행 → 공급자 선정 → 계약 체결 → 사후관리
전자역경매	입찰 준비(조달계획) → PQ 심사 및 입찰공고 → 경매 진행 및 낙찰 → 계약 체결 → 사후관리
기본협정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후, 납품주문을 위한 작은 경쟁에 초청하여 진행

- 국방부에서 국방장비에 대한 대규모 조달을 진행하는 경우, 시장조사(market survey)를 통해 잠재적 생산자나 비용을 조사한 후, 제한입찰 등의 형태로 조달이 진행됨(IHS Jane's, 2017 : p.15)
- 한국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려면, 외국기업으로써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그 외 입찰방식은 입찰참여자격에 따라 현지법인이어야 하거나, 현지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 국방조달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형식인 일반경쟁입찰과 제한입찰로 진행되는 절차를 토대로 방산기업의 입장에서 참여방법을 기술함

1. 입찰준비단계

1) 현지화 작업

- 외국기업으로서 케냐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직접 조달과정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지를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외국 방산기업들의 케냐 진출형태를 보면, 본사는 자국에 두고, 현지법인형태로 케냐에 설립한 경우가 많음(JGH Marine East Africa(덴마크),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Corporation(중국), Saab Kenya(스웨덴) 등)
- 케냐에서 사업 유형으로는 유한회사(개인 및 합작), 외국계 지사, 연락사무소,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s), 협동조합 등이 존재하며, 유한회사 중 개인회사는 2~6명의 투자자, 합작회사는 7명 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함⁴⁾
 - 회사설립 기본 자본금은 800만 케냐실링(약 10만 달러)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며(개인회사 설립 시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투자인증서를 발행하며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현지인 투자자 또는 운영 이사진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음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피 감사 의무가 없고,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적은 관계로 개인 기업과 함께 대표적 케냐 법인 형태이며(전체 등록 법인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 개인유한회사는 소규모 영세 사업으로부터 연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의 중견기업 등 다양하게 존재함.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등록 법인 중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식회사 설립 법정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케냐실링(약 10억 달러) 이상이며, 3인 이상의 발기인과 7명 이상의 주주를 필요로 함
 - 나이로비 주식시장 상장 요건은 최소 5년간 이익 창출 증빙, 25% 이상의 주식 공개 등 까다로우며, 상장 시 요구 자본금 규모가 일반적인 케냐 법인의 규모에 비해 높고, 피 감사 의무 부여 등으로 인해 상장의 실익이 크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 및 상장에 적극적이지 않음(2016년 12월 기준 나이로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 수는 64개임)
 - 케냐에 진출한 외국계 지사의 경우,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비합리적인

4) KOTRA 국가정보 중 진출형태별 절차 부분을 주로 참조하여 정리함 (검색일 : 2017. 8.10.)

<표 2-2> 케냐의 진출유형별 비교

구분	법인	외국계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기	가능	가능	불가능
자본금	10만 달러 이상		
대표이사	1인 이상		
이사	1인 이상(국적, 케냐 거주 여부 불문)		
감사	1인 이상(국적, 케냐 거주 여부 불문)		
법인세 과세범위	총 수익금의 30% (*총 배당금의 1% 인지세 징수)	총 수익금의 37.5%	법인세 및 VAT 면제
회계처리(조세율)	케냐 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본국소득과 합산처리	
본국 송금 시 과세 (과실송금 여부)	배당금(10%), 이자(25%)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로열티 20%과세	
소송(분쟁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주 : 외국계지사 - 외국계열의 회사로 케냐 내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지사가 해외본사에 지불한 경비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님
 연락사무소 - 외국계열의 지사로 연락사무소 역할만 담당하고 케냐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자료 : 케냐 투자진흥청, KOTRA 국가정보 (검색일 : 2018. 8.10.)

- 방위산업의 경우, 다른 형태보다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회사법 제486조에 따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회사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주식회사의 등록요건이나 상장요건 등이 유한회사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어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것을 추천함
 - 현지법인 설립을 결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는 타당성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진출하여야 함

<표 2-3> 케냐의 현지법인 등록절차

회사등록부로부터 회사명 확인								
1단계	소요시간/비용	3일 소요 / 약 5달러						
	참고사항	등록 가능한 회사명인 경우 30일간 보유						
회사정관 등록금 및 인지세 납부								
2단계	소요시간/비용	8일 / *회사 인지세 하기 참고사항 참조						
	참고사항	※ 회사 인지세 자본금 10만 케냐실링(약 1,200달러)까지 : 2,200케냐실링(약 27달러) 자본금 10만 케냐실링 이상 : 2만 케냐실링마다 120케냐실링 부과, 최대 6만 케냐실링 *인지세는 케냐 관세청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납부, 은행 수수료 100케냐실링 (약 1.2달러) 별도						
회사 정관등록								
3단계	소요시간/비용	7~14일 / *아래 표 참조						
	참고사항	※ 구비서류						
		<table><tr><th>개인회사(유한회사)</th><th>주식회사</th><th>외국지사/연락사무소</th></tr><tr><td>회사정관: 공인변호사가 작성하며, 회사 서기 역할 겸함 회사 이사 및 서기 등록 서류(서식 203호) 현지 회사 주소지 서류(서식 201호) 회사법 준수 서약서(서식 208호) 기본 자본금 증명서(소정양식)</td><td>개인회사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회사 이사진의 이사직 동의서 (서식209호) 회사 이사진 명단(서식 201호) 회사법 111(2) 준수 서약서(서식 212호)</td><td>본국 본사의 정관(공증 필요) 본사 본국 내 등록서류 리스트(서식 236호) 본사 이사진 및 서기 명단(서식 237호) 케냐 내 본사담당직원 명단 및 연락처 (서식 238호) 본사 연락처 정보(서식 250호)</td></tr></table>	개인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외국지사/연락사무소	회사정관: 공인변호사가 작성하며, 회사 서기 역할 겸함 회사 이사 및 서기 등록 서류(서식 203호) 현지 회사 주소지 서류(서식 201호) 회사법 준수 서약서(서식 208호) 기본 자본금 증명서(소정양식)	개인회사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회사 이사진의 이사직 동의서 (서식209호) 회사 이사진 명단(서식 201호) 회사법 111(2) 준수 서약서(서식 212호)	본국 본사의 정관(공증 필요) 본사 본국 내 등록서류 리스트(서식 236호) 본사 이사진 및 서기 명단(서식 237호) 케냐 내 본사담당직원 명단 및 연락처 (서식 238호) 본사 연락처 정보(서식 250호)
		개인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외국지사/연락사무소				
회사정관: 공인변호사가 작성하며, 회사 서기 역할 겸함 회사 이사 및 서기 등록 서류(서식 203호) 현지 회사 주소지 서류(서식 201호) 회사법 준수 서약서(서식 208호) 기본 자본금 증명서(소정양식)	개인회사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회사 이사진의 이사직 동의서 (서식209호) 회사 이사진 명단(서식 201호) 회사법 111(2) 준수 서약서(서식 212호)	본국 본사의 정관(공증 필요) 본사 본국 내 등록서류 리스트(서식 236호) 본사 이사진 및 서기 명단(서식 237호) 케냐 내 본사담당직원 명단 및 연락처 (서식 238호) 본사 연락처 정보(서식 250호)						
※ 모든 서식은 건수 별로 등록 수수료 200케냐실링(약 2.4달러) 부과								
개인 및 회사 사업등록번호(PIN)/부가가치세(VAT) 등록								
4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이내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 PIN은 VAT, 서비스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수입, 수출 시, 자동차 구매 등 모든 상거래에 필수이며, PIN을 취득 후 VAT 등록이 가능한데, 1일 이내 모두 처리가 가능 ※ 신청기관: 케냐관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전화: +254 (020) 4999 999, 4998 000, (711) 099 999 E-mail: callcentre@kra.go.ke / 온라인 신청 가능(www.revenue.go.ke/index.php/kra-portal)						
영업 허가증 취득								
5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참고사항 참조)						
	참고사항	비즈니스 종류와 고용인 수, 회사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 고용인 5~20인, 50~300㎡ 상점의 소규모: 5,000케냐실링(약 60달러) 고용인 50인 이상, 300㎡ 이상 중규모: 2만~5만 케냐실링(244~610달러) 신청기관: 현지 관할시청(나이로비 시청 내 Central Registry) 전화: +254-20-222-4281/2, Ext: 2179/2279						
국민안전보장보험(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등록								
6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로 고용인 월급의 1% 또는 400케냐실링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50%씩 부담해 매달 지불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신청기관: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주소: P.O. Box 30599 - 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20) 2729911, 2710552, 0722-204192, 0734-699926 팩스: (254-20) 2727882, 2722013, 2711615 E-mail: info@nssfkenya.co.ke / 홈페이지: www.nssf.or.ke						
국민건강보험(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등록								
7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 고용주 의무사항은 아니나, 고용인이 희망할 경우, 매월 50케냐실링을 삭감해 NHIF에 납입						
개인소득세 등록								
8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 매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필요						

주 : 상기 소요시간 및 비용은 케냐투자청에서 제시하는 공식 수치일 뿐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때로는 급행료(2~3배 가량)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케냐 투자진흥청, KOTRA 국가정보 (검색일 : 2018. 8.10.)

2) 입찰준비

- 우선 케나에서는 조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주로 공공기관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방조달에서 행해지는 제한입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회계직원에 의해 조달체계와 절차가 세워지게 됨(공공조달 및 자산 처분법 part 5. 44~45)

part 5. 조달기관(부서)의 내부조직

44. (1) **(회계직원의 책임)** 공공기관의 회계직원은 공공기관이 동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우선적 책임이 있다.
- (2) (1)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직원은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a) 공공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의 조달이 승인된 예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b) 동 법에 따라 조달기관 내에 모든 조달과 자산 처분 위원회(committees)를 둔다.
 - (c) 조달계획은 중장기 재정 프레임워크와 재정정책 목적과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3)에 따라 중앙 재무부(National Treasury)에 제출해야 한다.
 - (d) 동 법에 따라 조달과정에 문서를 적절히 하고, 모든 조달기록의 보호예치(safe custody) 한다.
 - (e) 공공재정관리법(Public Finance Management, 2012)의 section 68, 147, 148, 149를 준수한다.
 - (f) 조달기관의 모든 계약을 승인하고 서명한다.
 - (g) 공공기관의 조달 및 자산 처분과정이 동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h) 조달과정이 조달, 개시(initiation), 프로세스, 물품/공사/용역의 납품에 대해 다른 전문적 직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 (i) 회계연도의 개시(commencement) 후 60일 이내 조달예산과 관련 참조 및 예정 계획(preference and reservation scheme)을 적용하는 조달계획의 일부를 규제청에 제출한다.
 - (j) 동 법이나 의회의 다른 법, 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승인된 다른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 (3) **국가보안조직(national security organs)에 의해 준비된 조달계획은 중앙 재무부(National Treasury)에 제출을 예외로 한다.**
- (4) 천연자원의 채굴(exploitation)에 대한 조달 거래(procurement transaction)를 포괄하는 회계직원은 헌법 제71조 및 다른 성문법 규정에 따른다.
45. (1) 회계 직원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직원은 조달 및 자산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용이하도록 체계와 절차를 세운다.
- (2) (1)에서 요구된 절차는 동 법과 규칙에 따라 구성된다.
- (3) 모든 조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a) 조달기관의 승인된 예산 내에서 연간 조달계획을 통해 고려해 조달기관에 의해 계획을 세운다.
 - (b) 규정된 허용치 매트릭스(threshold matrix)에 따라 조달기관에 의해 착수된다(undertake).
 - (c) 헌법 제227조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 (4) 모든 자산 처분 프로세스는 확인, 정리(consolidation), 처분 계획의 준비, 가격책정, 처분에 대해 다른 인사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 (5) 의심할 여지없이, 조달 및 자산 처분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공공직원이나 국가 공무원은 그의 작위(action) 및 부작위(omissions)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국방조달의 경우, 국방부의 회계직원은 매년 예산 준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각 회계연도 개시 전 승인된 예산 내 세워진 연간 조달계획을 준비함(동 법 part 6. 53)
 - 이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그룹 기업에 대해 예산 할당의 최소 30%를 유보하여야 함

- 다년도 조달계획은 1년 이상의 프로젝트나 계약에 대한 중장기 예산 세출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직원은 조달을 집행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조달절차도 개시하지 못함
- 조달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지침에 따라 진행됨
- 통상 조달계획은 공개되나, 국방부의 경우 조달계획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연간 조달수요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
 - 그런데 국방조달이 주로 제한입찰인 경우가 많아, 일반물자에 한해 PQ 공고를 사전에 내고 있어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함
- 조달계획 시 규제청(PPOA)은 회계직원이 가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시장가격지표(market price index)를 발행하는데, 이는 모든 조달이 시장가격을 우선으로 조달하기 때문임(동 법 part 6. 54(2), (3))
 - 비합리적으로 높은(inflated) 가격으로 조달거래를 하여, 그로부터 초래된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직원(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은 조달기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함

3) 벤더 등록

- 공급업체가 케냐의 국방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찰참여 적격성을 가진 자여야 함 (동 법 part 6. 55 (1))

- (a) 조달 및 자산처분에 대한 계약에 들어가는 법적 역량을 가진 자
- (b) 부실(insolvent), 청산 중인 자(in receivership), 파산자(bankrupt)나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자가 아닌 자
- (c) 규정된 업종(profession)의 일원일 경우, 모든 전문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자
- (d) 조달기관이 동 법 제38조의 인사(조달부서, 규제청장이 신뢰하는 법적 권한자)와 계약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e) 동 법의 part 11(조달계약 관련)의 조달 절차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 자와 그의 하도급자
- (f) 납세의무를 완수한 자
- (g) 부패나 사기 사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 (h) 공정고용법 및 관례에 심각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 법인이나 파트너십 업체의 경우, 개인, 협력업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하도급자가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사항이 발견되면 입찰참여 부적격자가 됨. 그럼에도 이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격자가 될 수 있음 (동 법 part 6. 55 (2), (3))

- (a) 이익의 상충(conflict)을 신고한 자
- (b)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과 가격경쟁이 유효하지 않거나 그 개인이나 컨소시엄(파트너십)으로만 제공할 수 있을 경우

- 입찰참여자격에 대한 허위, 부정확한, 미완성된 정보를 제공하면 입찰참여 부적격자가 됨 (동 법 part 6. 55 (5))
-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규제위원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조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법 part 3. 41 (1), (2))

<일반적 공통사항>

- (a) 동 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자
- (b) 케냐의 다른 법이나 판결에 따라 조달과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자
- (c) 미흡한 성과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 계약을 위반한(breach, 불이행) 자
- (d) 조달 및 자산 처분 절차에서 참여자격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
- (e) 동법 제135조(조달계약 형성)에서 요구한 대로 서면 계약으로 접수가 거절된 자
- (f) 동법 제181조에서 추구하는 규제청에 의해 발행된 윤리코드나, 의회법에 의해 규정된 관련 업종(profession)에 대한 윤리코드를 위반한 자
- (g) 납세 의무를 불이행한(defaulted) 자
- (h) 부패나 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i) 공정고용법령 및 관례의 심각한 위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특정사항>

- (a) 입찰문서에서 입찰보증 신고서(tender securing declaration) 양식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자
- (b) 업종별 규제 절차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자

- 또한 공공조달규제청(현재의 PPOA)에서도 심사관 위임(mandate)으로 법집행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조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동 법 part 3. 41 (3))
- 이러한 입찰참여 제한사항은 3년 이내의 기한을 두며, 규제청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판결 등) 그 후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으로 사법심사권을 청구할 수 있음 (동 법 part 3. 42)
- 각 공공기관의 조달부서 장들은 물품, 공사, 용역의 다양한 특정 카테고리별로 등록된 공급업체, 계약자, 컨설턴트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하는데, 이러한 벤더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신청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됨 (동 법 part 7. 71)

- (a) 동 법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eligibility) 기준 (입찰참가 적격성 규정인 41조, 55조 해당)
- (b) 조달할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장비, 시설, 필요 자격, 경험, 자원을 규정하는 역량 기준 (규격인증 해당)

- 입찰참여 적격성은 있지만, 역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후보자 및 입찰자는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해명을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벤더등록의 목적은 일반경쟁입찰 이외의 대안적 조달방법에 적용될 때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벤더 목록은 다음과 같이 관리됨
 - 국방조달에서 제한입찰경쟁 등을 활용할 때, PQ 심사 대상으로 등록된 벤더에게 PQ 초청을 할 수 있음

- (a) 공급할 의도가 있어 제출된 하드카피,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생성된다(generated).
 - (b) 지속적인 적용 및 업데이트를 한다.
 - (c) 반기별 등록 평가를 한다.
 - (d) 시장정보와 조사(survey)를 통해 생성된다.

- 이렇게 형성된 각 정부기관의 벤더 목록은 카테고리별로 관리유지 및 정기적 업데이트가 되는데, 다른 국가조직이나 공공기관에 벤더목록 활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쟁과정에서 발전된 목록을 제공할 수도 있음 (동 법 part 5. 52 (3) ~ (4), part 6. 56)
 - 벤더가 전문기관인 경우, 특정 업종의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발전된 목록이어야 함

2. 입찰참여단계

1) PQ 심사 및 입찰초청

- PQ 심사는 일반경쟁입찰 이외에 모든 조달방식에 적용됨 (동 법 part 8. 93 (1))
- PQ 심사를 위해 조달부서의 회계직원(국방부의 경우 조달담당 직원)은 입찰 후보자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PQ 초청 공고를 냄 (동 법 part 8. 93 (3), (4))
 - 국방조달 중 일반물자는 국방부 홈페이지 Tender 메뉴를 통해 PQ 초청공고를 확인할 수 있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동일한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 (a) 조달기관의 명칭, 주소, 계약 세부사항
- (b) 납품 및 계약수행을 위한 장소 및 일정표와, 물품, 용역, 서비스의 속성과 품질을 포함한 조달 요구사항의 개요(outline)
- (c) PQ의 주요 요구사항 및 기준에 대한 설명
- (d) 문서에 사용될 언어와 지불 가능한 가격(통화)을 포함하여 PQ 문서를 획득하기 위한 지시문
- (e) PQ 신청서 제출 마감일과 장소에 대한 지시문
- (f) 적용 가능한 참조 및 예정 계획이나 관련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조건들
- (g) 입찰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신고서(declaration)
- (h) 수행능력이 있는 입찰자만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

- 입찰후보자가 PQ 신청서류를 요청하면, 회계직원은 PQ 문서를 발행하며, 입찰 후보자가 PQ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최소 14일이 소요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법 part 8. 94 (1)~(5))
 - 모든 입찰후보자는 PQ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PQ 문서에 대한 문의를 회계직원에게 할 수 있으며, 입찰후보자에게 제공되는 PQ 문서는 PQ 초청 공고서의 내용보다 다음과 같은 상세한 지시문을 담고 있음

- (a) 조달기관의 명칭, 주소, 계약 세부사항
- (b) 납품 및 계약수행을 위한 장소 및 일정표와, 물품, 용역, 서비스의 속성과 품질을 포함한 조달 요구사항의 세부사항(details)
- (c) 입찰후보자로부터 요구된 서류 증거 및 정보와 제출된 표준 서식을 포함하여 PQ 신청서를 준비하는 지시문
- (d) 제출 마감일과 장소를 포함하여 PQ 신청 제출, 밀봉, 라벨링에 대한 지시문
- (e) 신청서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

- PQ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입찰후보자에게 발행한 PQ 문서에 제공한 평가항목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입찰후보자의 부적격한 사유와 적격성에 대한 설명을 기술함 (동 법 part 8. 95 (1), (2))
 - PQ 심사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추천과 조달기능의 장이 (조달)전문가 의견을 들어 승인하여 회계직원에게 전달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동 법 part 5. 46)

-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은 입찰평가를 위해 임시 평가위원회(ad hoc evaluation committee, 이하 평가위원회)를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은 국가조직 및 정부기관은 내각장관(Cabinet Secretary)과, 지방정부는 지방집행위원회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외부 전문가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얻거나, 조달부서의 장의 추천으로 합류할 수 있으며, 회계직원에게 의해 서면으로 임명됨
 - 수요기관 부처(user department)와 2개의 다른 부처의 장이나 그 대리인, 필요시 조달 컨설턴트나 전문가를 포함하는 3~5명의 위원들로 순환직(rotational basis)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은 입찰 문서 평가에 자문하고 합리적 기간 내 평가위원회에 동일하게 추천함
 - 서기(secretary)로서 조달기능의 책임을 지는 인사로 함
-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
 - 기술적 재정적 부문의 조달 뿐 아니라 입찰평가, 제안서 사전규격평가(PQ), 참여등록목록, 관심표명(Expression of Interest, EOI), 승인된 다른 역할 등을 포함한 조달 프로세스상의 협상을 처리함
- 공공기관이 동 법을 준수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 회계직원은 중앙 재무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기술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음

<조달과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 법 part 5. 47, part 7. 84)

- 조달부서의 장은 회계직원에게 조달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전하는 책임을 가지며, 케냐에서 인정하는 조달전문가에 의함
- 조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보내질 보고서와 함께 입찰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명한 전문가 의견을 회계직원에게 제공함
 - 전문가 의견은 입찰평가와 낙찰건의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경우, 조달절차에 대한 가이드(Guidance)에 따르며, 회계직원은 낙찰결정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 PQ문서에서 제공하는 평가는 통상 다음과 같은 증명을 제출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차량부품, 가구 등의 PQ 심사 평가를 위한 제출 증명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PQ 문서상 게재기준)

- 법인증명(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업자 등록)
- 유효한 사업허가증(Valid county Business permit)
- 납세증명(Tax compliance certificate)
- 부가가치세/개인식별번호 증명(VAT/PIN Certificate)
- AGPO(Access to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증명 (AGPO certificate, 청년기업 필수 혹은 선택)

- 적격성 검토를 위해 PQ 문서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차량부품, 가구 등의 PQ 심사 평가항목> (국방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PQ 문서상 게재기준)

평가항목	서식	세부항목
기본정보 (General Experience)	표준서식 1 General Information	회사명(풀네임; 사업자등록상 회사명), 본사(Head Office) 주소 및 연락처, 사업 장소, 관리자 및 파트너의 성함/자격/국적/지분, 법인증명번호, 유효한 사업허가 번호, 부가가치세 번호, 개인식별번호, 납세증명 등
회사역량 (Personnel capabilities)	표준서식 2 Firm's Experience	유사 계약실적(사업별 기술) : 사업명, 고객명 및 주소, 계약금액/하도급 및 파트너 지분, 계약일자, 완공(완납) 일자, 계약기간/하도급 계약기간, 특정요구사항 등 * 그 외 reference list : 공공 혹은 민간 기관명 및 장소, 계약총액, 계약담당자
장비기술역량 (Equipment capabilities)	-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목록 (주요 규격서)
재정상태 (Financial position)	-	동산, 부동산, 재정적 신용 관련 자료
소송기록 (Litigation history)	표준서식 3 Litigation history	최근 5년간 집행 중 혹은 완성된 계약에 대한 소송기록 (합작인 경우, 파트너의 소송기록까지 포함) - 연도, 계약제결명, 고객명/소송 및 분쟁과정, 분쟁금액(케냐실링)

<표준서식 1>

APPLICATION FORM (1)

GENERAL INFORMATION

1. Company's Name in full.....
2. Address of Head Office.....
3. (a) Telephone No (Landline).....(Mobile).....
4. Place(s) of Business (*House/Plot NO; Street and Town name*) –
State owned or hired (*Offices*).....
(*Workshop*)
(*Materials/Equipment Yard*).....
(*Attach documentary evidence; Title/Lease or Hire/Tenant Agreement*)
5. Directors /Partners Particulars. (Attach documentary evidence)

Ser	Name	Qualification	Nationality	% Shares
a				
b				
c				

6. No.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Registration of Business Names
.....
(*Attach copy of Certificate*)
7. Current/Valid Business Permit
Number..... Date Issued..... Place Issued.
(*Copy of License required*)
8. VAT Certificate NO.....PIN Registration Certificate NO.....
(*Attach copies of the two Certificates*)
9. Valid Tax Compliance Certificate (From.....to.....)
(*Attach copy of Certificate*)

<표준서식 2>

APPLICATION FORM (2)	
<u>FIRM'S EXPERIENCE</u>	
Particulars of Contracts/Projects in hand or executed by the firm for (Evidence required for each Project; Contract documents, LPOs/LSOs, Payment documents etc)	
DETAILS OF CONTRACTS OF SIMILAR NATURE AND COMPLEXITY	
Name of Applicant	
Use a separate sheet for each contract.	
1	Name of employer/client
2	Employer address
3	Total Contract Sum/subcontract/partner share
4	Date of award
5	Date of completion
6	Contract/subcontract duration (years and months) - years - months
7	Specified requirements

<표준서식 3>

APPLICATION FORM (3)			
LITIGATION HISTORY			
Name of Applicant			
Applicant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f any history of litigation or arbitration resulting from contracts executed in the last five years or currently under execution. .			
Year	Award FOR or AGAINST Applicant	Name of client, cause of litigation, and matter in dispute	Disputed amount (current value Kshs.)

- 조달부서는 PQ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정식 입찰초청을 할 수 있음 (동 법 part 8. 95 (3), (4))
 - PQ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자에게도 PQ 심사결과 통지를 함
- 회계직원은 입찰초청을 준비한 후, 납품기록이 있는 적격한 입찰자 (PQ 적격자; 등록된 벤더)에게 입찰초청을 보냄 (동 법 part 7. 74)
 - 일반경쟁입찰인 경우에는 PQ 심사 없이 다수 입찰참가자를 위해 입찰관심표명 (EOI) 초청 공고를 하는데, 제한입찰 등의 경우는 PQ 심사 후 특정 적격자에 대한 입찰초청이 이루어짐
 - 일반경쟁입찰에서 공식적인 입찰공고는 예정가격이 규정된 허용치(threshold) 이상일 경우, 조달부서는 정부입찰 전용포털이나 기관 소유 웹사이트, 범국가적 유포가 되는 최소 2개 이상의 일간지(지방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입찰관심표명(EOI) 초청공고를 하며, 허용치 이하인 경우는 케냐의 전자입찰 포털 등의 전자 공고나 특정 장소에 공고할 수 있음 (동 법 part 8. 96)
 -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문과 입찰 관련 문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며, 케냐의 정부입찰 전용포털과 1개 이상의 영자신문이나 간행물에 공고함 (동 법 part 7. 89)
 - 국방조달의 경우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주로 게재하며,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음
 - 제한입찰에서도 입찰공고 규정은 동일함
- 회계직원은 입찰초청에 따라 입찰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함 (동 법 part 8. 98)
 - 공급업체는 필요시 구체적인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해 입찰공고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하여 구매함
- 조달부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원 입찰 관련 문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추가사항(addendum)을 발행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함 (동 법 part 7. 75)
 - 입찰 관련 문서의 수정은 조달부서가 자체적 사유로 혹은 입찰후보자나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정의 추가사항은 즉시 제공되어야 함
 - 입찰제출마감일 전 준비하기 위한 기한이나 지명된 입찰기간이 1/3 미만인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조달부서는 제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

- 공급업체가 제출할 입찰서는 서면으로 서명된 것이어야 하며, 소책자로 제출하게 되면 봉투에 밀봉해야 함 (동 법 part 7. 77)
 - 제출된 입찰서와 밀봉된 봉투에는 승인된 입찰번호를 붙이게 되며, 제출마감일 전에 접수되어야 함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음)
 - 입찰서가 우편송부 시 조달부서의 임원(staff)에 의해 수령되거나, 우편송부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전달된 경우 여러 입찰서를 넣어두는 입찰박스(tender box)를 개방하지 않음(개찰을 하지 않음)
 - 우편에 의해 송부된 입찰서를 무심코 개방될 경우, 개방된 직원이 즉시 개찰 사실을 기록하고 입찰박스에 넣어야 하며, 특별한 접수방식이 부재할 경우에는 조달부서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접수할 수 있음
 -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2% 미만을 지불함 (동 법 part 6. 61)
- 이러한 입찰서는 표준문서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통상 표준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동 법 part 6. 58, part 7. 70)
 - 이러한 입찰 관련 문서(표준문서)를 획득하는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a) 조달할 물품, 공사, 용역 관련 제60조(기술요구사항)의 규정된 특정 요구사항과 납품 및 완공 기한
- (b) 공사 조달 시, 관련 도면(drawings)과 내역 명세서(bills of quantities), 공개된 기준만을 근거로 한 프로젝트 견적 총액(total estimated cost). 단, 입찰자가 엔지니어의 추정 퍼센트 내외로 견적을 내는 것을 근거로 하면 그 자는 부적격이 되지 않는다.
- (c) 계약체결 전에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해, 계약서 일반 및 특수조건
- (d)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에 할당된 입찰번호
- (e)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입찰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지도(instruction)
 - (i) 입찰서 서식, (ii) 원본 입찰서와 제출되는 사본의 수,
 - (iii) 입찰보증 제공시 요구사항 그 보증의 형식과 양
 - (iv) 입찰서 제출자 자격으로 제공될 증거의 요구사항
 - (v) 소프트 혹은 하드 카피를 통한 입찰자에 의한 입찰문서 제출과 조달기관의 촉진 (facilitation)
 - (vi) 필요시 입찰서의 참조 및 예정 계획이 입찰 문서에 명확히 설명하는(spelt out) 조달기능
- (f) 입찰서가 제출되는 장소와 시간의 설명,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즉시 개찰된다는 설명, 개찰장소의 설명
- (g)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representatives)가 입찰서 개찰을 시도한다는 설명
- (h) 입찰유효기간에 대한 설명(statement)
- (i) 입찰서 평가 및 비교의 절차와 사용된 기준
- (j) 조달기관의 회계직원이 동 법 제60조에 따라 계약체결 없이 조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
- (k) 입찰자에게 하도급자의 세부사항을 제공토록 하는 규정과, 하도급자는 동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서약서
- (l) 동 법이나 규칙에서 요구하는 입찰 서류

<표준문서 주요 목차 - 물품분야>

TABLE OF CONTENTS	
SECTION I	INVITATION TO TENDER
SECTION II -	INSTRUCTIONS TO TENDERERS
APPENDIX TO INSTRUCTIONS TO TENDERERS	
SECTION III -	GENERAL
SECTION IV -	LETTER OF APPLICATION
SECTION V -	STANDARD FORMS
APPLICATION FORM (1) - GENERAL INFORMATION	
APPLICATION FORM (2) - FIRM'S EXPERIENCE	
APPLICATION FORM (3) - LITIGATION HISTORY	
APPLICATION FORM (4) - REFERENCE LIST	
SECTION VI -	EVALUATION CRITERIA
SECTION VII -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ECTION VII -	DECLARATION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제출마감일 전에 입찰서의 변경 혹은 회수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수정할 수 있음 (동 법 part 7. 76)
 - 입찰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입찰서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입찰서의 조건을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도 없음
- 입찰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은 개찰을 위해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입찰개찰위원회를 구성함 (동 법 part 7. 78)
 - 위원 중 최소 1명은 입찰 프로세스나 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야 함
 - 적격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수처리되며, 동 위원회를 통해 제출마감일 이후 즉시 개찰이 진행되며, 개찰 시에는 입찰서 제출자와 그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음
 - 회계직원은 요구 시 입찰개찰등록 사본을 입찰제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3) 입찰평가 및 낙찰자 통보

- 입찰개찰 후,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은 입찰서 평가를 위해 임시 평가위원회(ad hoc evaluation committee, 이하 평가위원회)를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동 법 part 5. 46; PQ 심사에서 평가위원회의 역할 참조)
-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응성 있는(responsive) 입찰서간에 평가 및 비교를 하는데, 그 평가 및 비교는 입찰 관련 문서에 그 절차와 기준에 따름 (동 법 part 7. 80)
 - 여기서 대응성 있는 입찰서란 입찰 관련 문서 상 모든 적격성 및 다른 의무적 요구사항에 잘 따르고 있는 입찰서를 의미함 (동 법 part 7. 79 (1))
 - 전문서비스 입찰의 경우, 관련 업종협회에 의해 발행된 행정명령에 따른 평가 기준을 따름
- 일반적으로 입찰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이어야 하며, 평가목적에 위해 가격, 품질, 기한, 서비스를 고려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함 (동 법 part 7. 80 (1))
 - 통상 회계직원은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비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된 정확하고 완전한 기술설명서를 제공함 (동 법 part 6. 60 (1)~(3))

- (a) 설계, 규격, 기능성, 이행실적에 적합해야 한다.
- (b) 우선적으로 국가적 국제적 표준에 근거한다.
- (c) 품목의 수명을 계산한다. (감안한다)
- (d) 품목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계산한다. (감안한다)
- (e)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 (f) 품목을 배치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 (g) 품목을 서비스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 국제입찰 시, 기술적 요구사항은 케냐 법 하의 요구사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표준과 국제무역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표준에 근거함 (동 법 part 7. 89 (1)(d))

- 기술적 요구사항을 기술하는데 충분히 정밀하고 명료한 방식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상표, 품명, 특허(patent), 설계 타입,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 특정 원산지 등을 언급할 수 있음 (동 법 part 6. 60 (4))
 - 이는 특정 상표의 규격이나 그 규격과 동일한 제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품목을 특정화할 수 있음
- 개찰시 제출된 입찰가액(tender sum)은 최종적인 절대값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조정되지 못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격평가를 함 (동 법 part 7. 82)

- 평가위원회에서는 최대 30일 이내에 평가를 수행하고, 입찰평가 후 각 위원이 서명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조달책임자(조달부서의 장)에게 제출, 회계 직원에게 전달됨 (동 법 part 7. 80 (4)~(7))
 - 조달부서는 입찰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자로부터 각종 증명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입찰평가 후와 낙찰 전 사이에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최저가로 평가된 대응성 있는 입찰서를 제출된 입찰자의 자격증명을 확인하는 사후평가(post-qualification)를 실시함 (동 법 part 7. 83)
 - 평가위원회는 사후평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실사에는 입찰자가 선약(prior engagement)이 있는 자로부터의 신뢰적인 실적(confidential references)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함
- 이러한 입찰평가 과정에서는 입찰자와 조달부서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입찰서(제안서 혹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자가 입찰 평가 및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은 금지됨(동 법 part 6. 65)
 - 이를 위반하면 입찰자는 입찰참여 부적격자가 되며, 공무원은 징계를 받음
- 낙찰자 선정으로 인정되는 성공적 입찰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동 법 part 7. 86)

- (a) 가장 낮은 가격평가를 받은 입찰서
- (b) 제안요청 방식을 활용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비롯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 제안서별로 기술적, 재정적 제안서에 할당된 점수들을 합쳐, 조달기관에 의해 결정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대응적 제안서
- (c) 가장 낮게 평가된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가진 입찰서
- (d) 가장 높은 기술적 점수를 가진 입찰서 (전문서비스 입찰의 경우) : 그 입찰서는 적용가능한 전문적 수수료(charges)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기반하여 평가됨

- 시민계약자나 최소 51% 지분을 가진 케냐 시민이 소유한 기관들은 총 평가 점수의 20%를 기술적 점수를 달성한 것으로 하여 우대함
- 입찰평가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달부서의 장은 전문가 의견을 회계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음 (동 법 part 7. 84; PQ 심사에서 전문가 의견 참조)
- 입찰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회계직원은 성공적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 통지를 하며, 낙찰자는 이에 대해 공지된 기한 내 계약 체결을 수용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입찰유효기간은 필요시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에 의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함 (동법 part 7. 88)
- 낙찰자가 계약체결의사를 서면으로 고지하면,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은 낙찰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를 공표함 (동법 part 7. 87)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 회계직원은 50억 케냐실링을 초과하는 사업규모의 모든 계약을 서명하기 전에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각 내무 장관(Cabinet Secretary)은 50억 케냐 실링(shillings)을 초과하는 규모의 모든 정부계약의 정보를 내각(Cabinet)과 재무부(national treasury)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동 법 part 11. 134)
 - 각 내무 장관(Cabinet Secretary)은 계약규모와 관계없이(irrespective)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내각(Cabinet)에 브리핑을 해야 하므로,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계약의 대부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각(Cabinet)으로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은 계약준비를 하고 난 후에 참여자간 모든 협정을 반영한 계약문서를 서명하고, 낙찰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함 (동 법 part 11. 135)
 - 계약서명 전에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통상 계약금액의 10% 이하를 지불함 (동법 part 11. 142; 제2장 제3절 3. 국방입찰제도에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도 부분 참조)
 - 계약서명을 해야 한다는 통보서에 기재된 특정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만, 통상 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 회계직원에 의해 권한위임이 된 직원에 의해 계약서 서명이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실효성이 없음
 - 조달계약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 | |
|--|------------------------------------|
| (a) 계약 협정 서식 | (e)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 |
| (b) 입찰서 서식 | (f) 계약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
| (c)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가격표(price schedule)나 산출내역 명세서(bills of quantities) | (g) 계약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
| (d) 요구사항 명세표(schedule of requirements) | (h) 낙찰통보서 (notification of award) |

- 이때, 낙찰자는 다음의 계약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계약제한 대상자인 이익과 연관된 국가 공무원 및 공공직원은 서면으로 그 이익의 속성(nature)을 표명해서, 해당 이익과 관련된 계약은 참여가 제한됨 (동 법 part 6. 59)

<계약 제한 대상자>

- (a) 공공직원, 국가공무원, 국가조직이나 공공기관의 위원회(committee or Board)의 위원
- (b) 공공기관이나 국가조직의 직원

<계약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

- (a)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 직원 자기자신
- (b)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 직원의 배우자나 자식
- (c) 비즈니스 조함원(associate) 이나 대리인
- (d) 직원이 실질적이거나 지배적인 이익을 가지는 법인, 민간회사, 파트너십이나 다른 기관

-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한 경우, 입찰보증⁵⁾은 몰수당하며, 차기 낮은 가격 평가를 받은 입찰자에게 기회가 돌아감 (만약 입찰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동 법 part 11. 136)
- 계약체결이 되면, 일반적으로 회계직원은 규정된 기한 내 특정 장소의 게시판이나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모든 계약체결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공공조달 규제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국방부 등 국가안보조직(National Security Organs)에 의한 조달계약 체결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동 법 part 11. 138)
- 낙찰시 조달부서에 의해 계약의 수정 혹은 변경이 승인된 경우, 계약의 수정 및 변경이 효력을 가지며, 회계직원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비용타당성이 있다고 입증된 경우 평가위원회의 추천으로 승인됨 (동 법 part 11. 139)

- (a) 계약기간의 연장
- (b) 원가(prime cost) 사용
- (c) 비상시(contingencies) 사용
- (d) 배상 비용(reimbursable cost)
- (e) 잠정 금액(provisional sum) 사용

5) 제2장 제3절 3. 국방입찰제도에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도 부분 참조

- 어떤 계약도 계약서명을 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는 상향 조정이 되지 않으며, 12일 이후에야 다음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이 됨

- (a) 가격 변경은 케냐 국립 통계청(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배적인 소비자 물가 정보(consumer price index)나 케냐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enya)에서 발행되는 월간 물가상승 비율(inflation rate)에 근거한다.
- (b) 물품과 용역의 수량(quantity) 변경은 원 계약 수량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c) 공사의 수량(quantity) 변경은 원 계약 수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d) 가격이나 수량의 변경은 계약기간 내 집행되어야 한다.
- (e) 모든 계약 변경의 누적치(cumulative value)는 원 계약가격의 25% 이상까지 총 계약가격의 증액(increment)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 회계직원은 변경 및 수정된 계약에 대해 공공조달규제청에 분기별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25% 이상의 계약가격 증액이 초래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새로이 분리하여 입찰이 진행됨
-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이나 그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직원에게 계약 이행 및 납품 수령이 되기 전에는 대금지불이 되지 않으나, 입찰문서에서나 계약서 상 특정화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선금지급이 가능함 (동 법 part 11. 139)
 - 선금지급은 계약 서명 전에는 지불되어서는 안 됨
- 선금지급은 입찰가격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낙찰자가 선금지급 보증을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에게 제출하면 지불됨 (동 법 part 11. 147, 148)
 - 선금지급 보증은 평판이 좋은(reputable) 은행이나 권한이 있는 재정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낙찰자가 외국인일 경우, 케냐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enya)에서 인정한 케냐 내 이에 상응하는 은행에서 발행됨
 - 선수금을 입찰 및 계약 관련 활동 이외에 활용하게 되면 즉시 부채로 인식되어 선금지급 보증금을 몰수하게 됨
- 조달부서의 장은 납품된 물품, 용역, 공사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도록 회계 직원을 지원하며, 전문가나 다른 기술부서로부터 기술규격이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직원에게 납품수령 증명서(certificate of acceptance)를 발행함 (동 법 part 11. 150)
 - 전문가나 다른 기술부서에 의해 기술적 속성이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전문가가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책임을 지며, 회계직원에게 납품수령 증명서를 발급함
- 회계직원은 최종 납품수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자(계약자)에게 계약

-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공사인 경우 실질적 완공이나 이양(handover)이 있는 날로부터 보증금의 보관기간이 시작됨) (동 법 part 11. 145)
- 복잡하고 특수한 조달계약의 경우, 회계직원은 조달부서, 공급업체 등록부서, 관련 기술부서, 컨설턴트 등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계약집행팀을 설치하여 계약자의 계약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납품수령, 계약종료 등의 계약관리를 함 (동 법 part 11. 151)
 - 다른 조달기관에 위탁한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집행팀에 구성원을 추가로 선출함
 - 조달부서의 장은 조달계약의 월간 실적보고를 회계직원에게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며, 사업을 주관하는 관리부서의 요청으로 회계직원에게 계약종료가 승인됨 (동 법 part 11. 152, 153, 154)
 - 복잡하고 특수한 조달계약이 아닌 경우, 조달부서의 장은 납품수령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함
 - 복잡하고 특수한 조달계약의 경우, 기술부서가 납품수령을 확인하고 회계직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함
 - 공공조달규제청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감사를 진행함 (동 법 part 4. 43)

<공공조달규제청의 감사>

43. (1) 규제청이나 규제청에 의해 위임된 기관은 조달 및 자산처분 절차나 계약과 관련된 조달기관과 계약자의 기록물과 계좌를 합리적 시간내에 감독, 평가, 검토, 감사할 수 있고, 조달기관과 계약자나 입찰자는 이에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 (2) 규제청은 입찰 참여 동안 조달 감사를, 낙찰된 입찰 집행과정에서는 계약 감사를, 계약 체결 후 요구되는 조달 및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감사를 수행한다.
- (3) 검사관(Inspector)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회계장부(books), 기록물, 통계보고(returns), 보고서, 조달기관이나 조달 및 자산처분 절차 참여자의 다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 (4) 검사관(Inspector)은 접근가능한 문서의 사본을 만들거나 제거할 수 있다.
- (5) 검사관(Inspector)이 약정 문서를 제거하려고 할 경우, 검사관은 조달기관에 남겨진 문서의 사본을 공중해야 한다.
- (6) 검사관(Inspector)은 설명, 정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a) 조달기관(부서)의 피고용인이나 직원
 - (b) 조달 및 자산 처분 절차에 참여했던 인사(업체)의 피고용인이나 직원
- (7) 검사관(Inspector)은 규정된 조건과 제한사항에 대해 규정대로 추가적 권한을 가진다.
- (8) 감사과정 동안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규제청은 조달기관에게 위반을 교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조달부서의 회계직원은 낙찰공지 전, 주요 조달이 법집행이나 실질적 기술변화에서 벗어난 경우(overtaken)나 부적절한 예산이 제공된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바로 종료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동 법 part 6. 63)

4. 사후관리

- 계약 종료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라도 조달절차가 종료된 이후 최소 6년간 모든 조달기록을 보관해야 함 (동 법 part 6. 68)
- 입찰후보자나 입찰자는 조달과정에 나타난 손실 및 손해가 있다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혐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적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동 법 part 15. 167~171)
 - 행정적 검토요청이 발생되면, 심리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검토 요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검토가 진행된다면 검토위원회로부터 조달절차의 중지 여부를 회계직원에게 고지하게 됨
 - 검토요청 청구가 경솔하거나 단순화로 인한 경우, 조달절차 지연을 의도한 경우, 해당 청구를 기각함
 - 검토위원회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검토를 마무리해야 함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73. (검토위원회의 권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검토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한다.

- (a) 조달기관의 회계직원이 조달절차에서 했던 어떤 활동도 무효화한다(annul). 그것은 조달 및 자산 처분 과정 전체(entirety)를 무효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 (b) 조달기관의 회계직원에게 조달 및 자산처분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c) 조달 및 자산 처분과정에서 조달부서 회계직원의 결정에 대해 검토위원회의 결정을 대체해야 한다.
- (d) 규정된 규모(scale)에 따라 검토 참여자들간에 비용의 지불을 명령한다.
- (e) 기 조달 절차의 종료와 새로운 조달 절차의 개시를 명령한다.

<검토요청 수수료>

- 행정적 수수료 : 5,000 케냐실링
- 입찰유형 및 규모별 검토청구 수수료

Amount of Tender	Fees
1. Tenders of Ascertainable Value	
(a) Does not exceed KES. 2,000,000	1% subject to a minimum of KES. 20,000/-
(b) Exceeds KES. 2,000,000/- but not over KES. 50,000,000/-	The fees for KES. 2,000,000 plus an additional fee of 0.25% on the amount above KES. 2,000,000
(c) Exceeds KES. 50,000,000/-	The fees for tender sum of KES. 50,000,000 plus an additional fee of 0.025% on the amount above KES.50,000,000/- subject to a maximum fee of KES. 200,000/-
2. Pre-qualification and other	KES. 40,000
“Unquantified Tenders	
(f) Any other Tenders	Subject to a minimum of KES. 20,000/- and a maximum of KES. 40,000/-
3. Upon request of an adjournment to a party by the Board	KES.10, 000/-
4. filing preliminary objection	KES.5, 000/-
5. Fee to accompany the review of	KES.40, 000/-

- 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 동 위원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이때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양측을 구속하지 못함) (동 법 part 15. 175)
 - 사법적 검토도 계약금액의 일정비중(대개 10% 미만)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후에 접수가 이루어지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고등법원은 사법적 검토를 완료해야 함
 - 고등법원의 결정에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45일 이내에 상고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됨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자연인은 400만 케냐실링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 법인은 1,000만 케냐실링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등의 법적 책임을 짐 (동 법 part 16. 176~177)
 - 입찰참여 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간 입찰참여를 하지 못함

<대규모 국방부품 조달>

- 역량차이 확인 : 군의 운영책임성을 고려한 전략적 국방 리뷰를 통해 확인
- 요구된 기술규격 개발 : 역량 차이를 확인한 후, 국방부는 요구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운영적 기술적 규격을 개발
- 시장조사(market survey) : 잠재적 공급업자와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케냐 조달기관들은 PQ 조건을 요청함)
- 시장조사 보고서 제출 : 케냐 장비 및 인프라 자문위원회 (EIAC : Kenyan Equipments & Infrastructure Advisory Committee; 대규모 공공지출 프로젝트의 조정책임을 짐)에 해당 보고서 제출
- EIAC에서 구매승인을 하면, 공개경쟁을 예외로 케냐 재무부에 신청함
- 입찰문서를 발행하여 잠재적 공급업자에게 전달
- 입찰신청 시, 실사(field trials and user trials)을 실시
-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 비용 및 안정성을 근거로 낙찰자 선정
- 계약협상 진행

자료 : IHS Jane's (2017)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 케냐 국방조달시장 입찰참여

Q 케냐 국방조달시장 진출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케냐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 상 케냐의 입찰참가자격(벤더등록적격자)는 케냐 현지법인이어야 하므로 외국기업은 참여불가함.

<입찰참여자격>

- (a) 조달 및 자산처분에 대한 계약을 하는 법적 역량을 가진 자
- (b) 부실(insolvent), 청산 중인 자(in receivership), 파산자(bankrupt)나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자가 아닌 자
- (c) 규정된 업종(profession)의 일원일 경우, 모든 전문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자
- (d) 동 법 제38조의 인사(조달부서, 규제청장이 신뢰하는 법적 권한자)와의 계약에 배제되지 않은 조달기관
- (e) 동 법의 part 11(조달계약 관련)의 조달 절차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 자와 그의 하도급자
- (f) 납세의무를 완수한 자
- (g) 부패나 사기 사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 (h) 공정고용법 및 관례에 심각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케냐 현지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구매할당(30%),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감면 등 우대정책이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기업들은 입찰참여에 불리함

Q 그렇다면, 입찰참여를 위해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가?

외국기업으로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케냐 국내에서 진행되는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음

국방조달에서는 주로 제한입찰경쟁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PQ 심사시 입찰참가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케냐 국내 입찰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혹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거나, 현지 업체와 MOU를 맺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음

 케냐 국방조달시장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참여가능한 유망품목은 무엇인가요?

도입시기 대비 수명연한 분석에 따라 케냐에서는 장갑차, 전투 및 훈련용 항공기, 상륙용 함대, 초계정, 미사일, 엔진 등에 대해 획득소요가 예상되는데, 중국과 세르비아는 기동분야, 중국과 러시아는 항공분야, 스페인은 선박 분야 등에 진출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을 염두하여야 함

최근 2013/14년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중국산 장갑차가 시험운전과정에서 발견되거나, 험악지형에서 작동이 멈추고, 작전 중 상부에서 누수문제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과 운용능력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중국산과 유사한 가격이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어, 한국의 주력수출품목 중 하나인 장갑차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케냐 투자

Q 케냐에 다른 외국 방산업체들은 어떤 형태로 진출했고, 각 사업유형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국 방산기업들의 케냐 진출형태를 보면, 본사는 자국에 두고, 현지법인형태로 케냐에 설립한 경우가 많음(JGH Marine East Africa(덴마크),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Corporation(중국), Saab Kenya(스웨덴) 등)

케냐에서 사업 유형으로는 유한회사(개인 및 합작), 외국계 지사, 연락사무소,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s), 협동조합 등이 존재하는데, 외국계 지사의 경우,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지법인 설립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임

구분	법인	외국계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기	가능	가능	불가능
자본금	10만 달러 이상		
대표이사	1인 이상		
이사	1인 이상(국적, 케냐 거주 여부 불문)		
감사	1인 이상(국적, 케냐 거주 여부 불문)		
법인세 과세범위	총 수익금의 30% (*총 배당금의 1% 인지세 징수)	총 수익금의 37.5%	법인세 및 VAT 면제
회계처리(조세율)	케냐 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본국소득과 합산처리	
본국 송금 시 과세 (과실송금 여부)	배당금(10%), 이자(25%)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로열티 20%과세	
소송(분쟁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주 : 외국계지사 - 외국계열의 회사로 케냐 내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지사가 해외본사에 지불한 경비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님

연락사무소 - 외국계열의 지사로 연락사무소 역할만 담당하고 케냐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자료 : 케냐 투자진흥청, KOTRA 국가정보 (검색일 : 2017. 8.10.)

Q 케냐에서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등록부로부터 회사명 확인				
1 단계	소요시간/비용	3일 소요 / 약 5달러		
	참고사항	등록 가능한 회사명인 경우 30일간 보유		
회사정관 등록금 및 인지세 납부				
2 단계	소요시간/비용	8일 / *회사 인지세 하기 참고사항 참조		
	참고사항	※ 회사 인지세 자본금 10만 케냐실링(약 1,200달러)까지 : 2,200케냐실링(약 27달러) 자본금 10만 케냐실링 이상 : 2만 케냐실링마다 120케냐실링 부과, 최대 6만 케냐실링 *인지세는 케냐 관세청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납부, 은행 수수료 100케냐실링 (약 1.2달러) 별도		
회사 정관등록				
3 단계	소요시간/비용	7~14일 / *아래 표 참조		
	참고사항	※ 구비서류		
		개인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외국지사/연락사무소
		회사정관 공인변호사가 작성하며, 회사 사기 역할 결합 회사 이사 및 사기 등록 서류(서식 203호) 현지 회사 주소지 서류(서식 201호) 회사법 준수 서약서(서식 208호) 기본 자본금 증명서(소정양식)	개인회사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회사 이사진의 이사진 동의서 (서식209호) 회사 이사진 명단(서식 201호) 회사법 111(2) 준수 서약서(서식 212호)	본국 본사의 정관(공증 필요) 본사 본국 내 등록서류 리스트(서식 236호) 본사 이사진 및 사기 명단(서식 237호) 케냐 내 본사담당직원 명단 및 연락처 (서식 238호) 본사 연락처 정보(서식 250호)
※ 모든 서식은 건수 별로 등록 수수료 200케냐실링(약 2.4달러) 부과				
개인 및 회사 사업등록번호(PIN)/부가가치세(VAT) 등록				
4 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이내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 PIN은 VAT, 서비스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수입, 수출 시, 자동차 구매 등 모든 상거래에 필수이며, PIN을 취득 후 VAT 등록이 가능한데, 1일 이내 모두 처리가 가능 ※ 신청기관: 케냐관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전화: +254 (020) 4999 999, 4998 000, (711) 099 999 E-mail: callcentre@kra.go.ke / 온라인 신청 가능(www.revenue.go.ke/index.php/kra-portal)		
영업 허가증 취득				
5 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참고사항 참조)		
	참고사항	비즈니스 종류와 고용인 수, 회사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 고용인 5~20인, 50~300㎡ 상점의 소규모: 5,000케냐실링(약 60달러) 고용인 50인 이상, 300㎡ 이상 중규모: 2만~5만 케냐실링(244~610달러) 신청기관: 현지 관할시청(나이로비 시청 내 Central Registry) 전화: +254-20-222-4281/2, Ext: 2179/2279		
국민안전보장보험(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등록				
6 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로 고용인 월급의 1% 또는 400케냐실링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50%씩 부담해 매달 지불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신청기관: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주소: P.O. Box 30599 - 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20) 2729911, 2710552, 0722-204192, 0734-699926 팩스: (254-20) 2727882, 2722013, 2711615 E-mail: info@nssfkenya.co.ke / 홈페이지:www.nssf.or.ke		
국민건강보험(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 등록				
7 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 고용주 의무사항은 아니나, 고용인이 희망할 경우, 매월 50케냐실링을 삭감해 NHIF에 납입		
개인소득세 등록				
8 단계	소요시간/비용	1일 / 소요비용 없음		
	참고사항	※ 매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필요		

주 : 상기 소요시간 및 비용은 케냐투자청에서 제시하는 공식 수치일 뿐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때로는 급행료(2~3배 가량)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케냐 투자진흥청, KOTRA 국가정보 (검색일 : 2018. 8.10.)

Q 케냐 투자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구분	내용	비고
일반적 인센티브	-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면제 혜택 : 수출촉진 및 전략 부문 자본재 수입 시 수입 금액 일부를 외국인 투자자가 지원할 경우 재무부와 협의해 관세 10%까지 인하 가능 - 1995년 투자우대조치 계획에 따라 200만 달러 이하 사업에서 개인 투자용으로 2년 이내 사용되는 자본재에 부과된 수입관세는 재무부장관 승인 하에 투자자의 소득세 감면 등으로 상쇄 가능함 - 수출자유지대(Export-Processing Zones: EPZs)에 위치한 기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며, 10년간 법인소득 면세와 그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자에게 송금이나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원천징수세가 10년의 면제기간이 주어짐. 또한 초기 투자에 있어서 20년간 100% 투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계류나 부품, 건축자재, 원자재 등 회사의 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는 재무부로부터 투자기업 인가서를 획득하면 외국인투자보호법(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ct: FIPA)에 의해서 과실,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자국 송금은 전액 보장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지는 국가적 보안문제나 공공적 필요에 의한 용도 외에는 토지 몰수 대상에서 보호되며, 위 2가지 이유에 의해 소유지를 국가로 이전하더라도 즉각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수출자유지대는 전국에 41개 지역, 나이로비 근처 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 외에도 나이로비, 보이, 케리초, 몸바사, 킬리비 등지에 위치함 (http://www.epzakenya.com/)
투자공제 비율	-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60% 투자공제를 인정하며, 설비투자용 기계, 플랜트 등 1,000만 케냐실링(약 120만 달러)에서 5,000만 케냐실링(약 600만 달러) 수입 시 10% 수입관세가 면세됨 - 투자한 건물, 기계, 사무용기기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매년 세금은 공제되며, 보세가공지역(MUB)에 투자 시 투자공제는 100%이고, 케냐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 중 제조 및 호텔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60%를 공제함	
감가상각 비율	- 호텔은 연 4%, 산업용 건물은 연 2.5%, 기계류는 연 12.5%, 차량류는 연 25~36.5%,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는 연 30%이다	
특정산업 인센티브	- 기계류는 12.5~37.5%, 농기계 37.5%, 컴퓨터 30%, 운송기계 25%, 선박 및 사무용기기 12.5%, 건축물은 호텔 4%, 공장 및 교량은 2.5%가 적용되나 무역 및 제조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업과 사무실은 비공제됨 - 보세허가업체는 100% 세액공제를 받으며 EPZ 입주기업은 공장설비에 대해 20년간 공제되며, 농업 및 목축업은 3년간 연 33%, 광업 및 495톤 이상 선박 구입 시 공제 가능함 - 식량 생산 및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비료, 농기계, 소득제 등의 수입관세는 전액 면제되고, 석유 탐사장비 반입도 재무부 허가 시 관세가 면제되며, 사업규모 1천만 케냐실링 이상인 외국 자본호텔 개·보수 및 증축을 위한 장비 반입도 외화 수입 증대 효과가 증명되면 관세가 면제됨	
특정지역 인센티브	- 자본금 1억 케냐실링 이하 소규모 기업이 Nairobi 및 Mombasa 이외 지역에서 영업하면 수입 자본재 50% 관세가 감면됨	
수출산업 인센티브	- 관세면제 제도는 제조업분야에서 수출을 위한 원자재 도입에 적용되는데, 이는 재무부산하 수출진흥 청에서 담당함 - 보세허가 제조업 제도는 해외 수출 진흥을 위한 것이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수입장비 및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용 건물 및 장비도 100% 세액공제를 받음	
경제특별 구역 도입	- 케냐는 Vision 2030에 의거해 경제특별구역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외에 경제자유항(Free ports),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Zones), 공장지대(Industrial Parks),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과학기술지대(Science & Technology Parks), 정보통신지대(ICT Parks), 농업자유지대(Agricultural Free Zones), 관광진흥지역(Tourism Development Zones), 비즈니스 인큐베이션(Business Incubation) 특구 등을 조성 추진 중임 - 케냐의 경제특별구역 후보지로는, 케냐의 Rift Valley지역은 농산물 가공 특구, 북동부 지역은 육류, 동물가죽 가공 특구, 빅토리아 호수지역인 니안자(Nyanza) 지역은 어류 및 섬유 가공 특구, 마차코스의 서부지역은 정보통신 특화 지역으로, 몸바사의 Coast 지역은 자유항과 수산업 특화지역으로 각각 개발할 예정임	도시와 지방지역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이로비, 몸바사, 키수무를 제외한 지역에 2억 케냐실링 이상 투자 시 150%의 세금감면 혜택은 2015년 7월 폐지됨
국제적 인센티브	- 케냐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기관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회원으로, MIGA로부터 투자 관련 비상업적 위험에 대해 보호받음 - 또한 케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소(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회원으로 투자 시 일어나는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음	

자료 : KOTRA 국가정보 (검색일 : 2017. 8.10.)

□ 케냐 진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활용

Q 케냐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단기적으로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을 모색할 경우, 우선 다음의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입찰준비단계			
1	시장정보 수집	방산수출지원시스템(D4B)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수출지원시스템(D4B)을 통한 해외 입찰정보 및 방산시장 동향 정보 수집 · 진출매뉴얼이나 시장동향 자료 수집 해외시장조사 (KOTRA) · 해외무역관(방산교역지원센터)을 통해 해외잠재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Jane's 등 방산 정보 서비스와 함께 D4B 활용, KOTRA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유용한 시장정보 수집
	전문인력 및 교육 등을 통해 전담화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KOTRA) · 해외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Contact KOREA 포털 내 DB 구축, 기업 대상 글로벌 인재 정보 제공 · 이력검증, 면접주선, 채용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 · 특정활동 비자취득 및 출입국 특혜부여 골드카드 발급 신규 수출기업화 (KOTRA) · 내수기업이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퇴직전문 무역인력(수출전문위원)의 1:1 밀착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KOTRA) ·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 등 교육	전문인력 구성을 통해 방산 특화된 시장조사에 활용, 향후 입찰참여 전담인력 확보와 연계 전담인력의 지역 및 품목 특성, 시장에 대한 교육
3	사전 마케팅 활동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국제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 참가지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경비 일부 지원 산업별 특화사업 (방산물자) (KOTRA) · 방산물자 관련 마케팅 및 수주지원 수출상담회 (KOTRA) ·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의 상담매칭 기회 제공 해외시장조사 (KOTRA) ·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잠재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KOTRA) · 전 세계 120개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등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필요한 제반 활동 지원 무역사절단 (KOTRA) ·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B2B 온라인 마케팅 (KOTRA) <일반물자> · B2B e-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아를 통한 상품 홍보, 해외 인콰이어리 수신, EMS국제배송 등 거래프로세스 전반 지원 해외전시회 (KOTRA) · 해외전시회 한국관 구성 및 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등 해외시장개척 진출 선도기업 육성 (무역협회) · 상품정보 온라인 홍보, 미니사이트 제작, 빅바이어 상시 거래 알선, 바이어 DB 타깃 마케팅, 해외 비즈니스 매칭, 전문무역상사 활용 매칭 등 K+ 인증제도 (무역협회) <일반물자> · 한국산 프리미엄 상품 인증(K+) 부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온라인 B2B 마케팅, 무역아카데미 지원 등) 무역촉진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 유망, 전략, 전문업종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참가 진행	국제 방산 전시회에 적극 동참하며, 방진회 등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 국내외에서 현지 협력업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해외수출 마케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자체 예산 활용한 지방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바이어 구매알선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에 대한 국내기업 알선 및 방한 바이어 현장방문시 통역, 무역상담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설치,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등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물자>	• 글로벌 쇼핑몰 입점지원, 눈 활용 마케팅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수출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물자>	• B2B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 입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최적화 등 해외 마케팅 지원	
		GMD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과정을 GMD를 통해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 선발 (조달청) <일반물자>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벤더 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온라인 홍보 등	
4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인증 획득	수출 초보 R&D (KOTRA)	•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분야 R&D를 발굴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투자를 지속화하며, 제품 우수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인증을 습득
		수출 유망 R&D (KOTRA)	•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분야 R&D를 발굴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DQ 마크 인증제도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분야 우수제품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 확대	
		해외인증 정보제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취급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취득 지원	
		고부가가치 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50~70%) 지원	
*	수출 관련 종합적 지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원), 마케팅(KOTRA), 교육 및 컨설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	수출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인 경우, 상기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참여
		월드챔프 (KOTRA)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킷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 시장정보 안내 등 5:5 매칭 펀드 지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지원센터)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 발굴,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 지원	
입찰참여단계				
1	입찰정보 획득	• 상기 시장정보 수집, 사전 마케팅 활동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과정을 통해 획득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여 그를 통해 입찰정보 획득
2	벤더등록 및 입찰참여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 선발 (조달청)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벤더 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온라인 홍보 등	현지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입찰참여를 준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벤더등록을 추진함) ODA 사업형태로 진행될 경우, KOICA 등을 통해 입찰참여 국가간 협력으로 G2G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KOTRA 등을 통해 입찰참여
		대외협력기금(EDCF) 활용지원 (한국수출입은행)	• 개도국 정부발주 수주사업 차관조건 개선, 민간협력 차관 및 섹터개발 차관 신설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해외진출 지원 (KOICA)	• ODA 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기술로 감면 및 면제제도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기술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로 감면 및 면제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중소기업 절충교역 참여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가치평가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해 1.5배~2배까지 최종가치 인정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G2G) 지원	• 국내외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정부간 거래 (G2G) 계약체결부터 이행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3	지적재산권 보호 조사	해외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활용 지원	▪ 6개국 (중국, 미국, 독일, 태국, 베트남, 일본)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상표/디자인 출원 등 비용지원, 최신 IP 동향 자료 제공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술보호를 위해 제안서 작성시 해당사항을 기재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계약 및 협상 단계				
1	수출 허가	방산수출 허가제도 (방위사업청)	▪ 해외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방산품목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산수출 허가를 받음
2	수출 보험 획득	환변동 보험료 지원	▪ 수출거래 환리스크 관리, 보험료 일정금액 지원	낙찰이 성립되면, 수출보험을 통해 손실위험을 예방함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커버를 위한 단기수출 보험	▪ 결제기간 2년내 수출 후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 적기 회수를 못할 경우 손실 보상 신용보험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제도	▪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등에 대해 보증료 일부 지원	
3	계약이행 및 납품	방산수출 후속군지원 제도	▪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해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 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계약체결 이후 후속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수출대금 지원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맺은 대기업의 추천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자금 대출, 수출팩토링, 전대금융	수출에 발생하는 대금에 대해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함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자금 지원	▪ 수출성장/촉진자금, 수입자금, 해외투자/사업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 수출초보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상생금융 프로그램 기업 등의 금리우대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정책조정물/고객조정물 우대금리 ▪ 상생자금 대출, 상생협력 대출, 해외온렌딩	
		수출 관련 자금 대출	▪ 선적전 보증공사의 수출보증보험서 발급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대출 (IBK 수출준비자금 대출) ▪ 수출강소 기업육성, 관세청 AFO 공인 획득기업 등을 위한 자금 대출 (수출기업 육성자금 대출)	
		동반성장 대출 등	▪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 미래선도분야 벤처기업 금리우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금리감면, 설비투자 펀드 우대	
사후관리단계				
1	모니터링	방산수출 후속군지원 제도	▪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해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 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계약체결 이후 후속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분쟁해결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모색함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설치 국가 중 분쟁수요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침해조사 등 소요비용 지원 (초동 대응) ▪ 분쟁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전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전략 컨설팅(분쟁대응)	